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9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엠젠솔루션
기 타	㈜에스엠벡셀
기 타	㈜휴림에이텍
기 타	디에스티㈜
기 타	㈜세영디앤씨
기 타	㈜썬힐네트웍스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㈜엠젠솔루션 과징금 3,600만원
㈜에스엠벡셀 과징금 2,800만원
㈜휴림에이텍 과징금 9,380만원
디에스티㈜ 증권발행제한 1월
㈜세영디앤씨 증권발행제한 1월
㈜썬힐네트웍스 증권발행제한 3월

□ **(수정의결)** ㈜엠젠솔루션 과징금 3,600만원
㈜에스엠벡셀 경고 조치*
㈜휴림에이텍 과징금 9,380만원
디에스티㈜ 증권발행제한 1월
㈜세영디앤씨 증권발행제한 1월
㈜썬힐네트웍스 증권발행제한 3월

* 당사자가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사유(감사보고서)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, 지연 가능성·사유에 대한 사전공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'경고' 조치로 수정의결함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**((주)엠젠솔루션)**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’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‘21.8.17.)를 9영업일 경과한 ’21.8.30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○ **((주)에스엠벡셀)** 회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’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’21.8.17.)를 5영업일 경과한 ’21.8.24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○ **((주)휴림에이텍)**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’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’21.8.24.)를 6영업일 경과한 ’21.9.1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※ 반기보고서 제출연장신고로 제출기한을 ‘21.8.17에서 ‘21.8.24.로 연장

○ **(디에스티(주))**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’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‘21.8.17.)를 7영업일 경과한 ’21.8.26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○ **((주)세영디앤씨)**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’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‘21.8.17.)를 6영업일 경과한 ’21.8.25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○ **((주)썬힐네트웍스)**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’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’21.8.17.)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0조, 제164조 제2항 제1호, 제429조 제3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및 제5호